



2006. 9. 1.

인도의 식품산업 수입관리제도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lgi@khidi.or.kr)

□ 인도의 수입식품관리제도

- 인도의 수입관세는 상당히 높고 복잡하다. 수입관세에는 “기본관세(basic duty)”, 상세관세(Countervailing duty, CVD)라고 불리는 “부가세(Additional duty, AD)”와 특별부가세(sepecial additional duty, SAD)가 포함된다. 2004년 1월의 구정부의 예산에서는 특별부가세(SAD)가 떨어졌지만, 2004년 7월에 등장한 신정부의 의해 제시된 예산에는 모든 직접세와 간접세에 Education Cess(EC)를 부과시키고 있음
- 1954년 식품 변조 방지법(PFA)과 1955년의 PFA 규정은 불순하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기성있게 표지된 식품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때때로 개정되었으며, PFA 표준과 규칙은 국내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
- PFA는 식품 색소, 방부제, 살충제 잔여량, 포장과 표지, 판매 규칙 등 식품 가공과 유통에 관한 다양한 면을 다루며, 모든 수입품은 표지와 표시 요건 등 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인도의 식품 검역은 인도 항구 및 국경 검역소에서 육류 및 식물 검역 실시
 - 육류 제품에 함유된 중금속, 방부제, 살충제 잔여량에 대하여 철저한 검역을 받아야 하며, 농업부의 마케팅 및 검역실이 규제 당국이며 규칙은 국내 가공업자와 육류 제품 수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
 - 식물 검역은 해로운 곤충과 해충법(Destructive Insects and Pests Act 1914)을 기반으로 2003년 개정안에 의하여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음
- 반입 항구에서의 수입 식품 통관을 위해, 제품이 PFA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항구 보건 당국의 인증서를 발급이 필요함
- 원산지에 관계없이 국내외 제품 모두 해당 식품이 식품법을 위반하고 공공 보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언론에게 통지하여 상표명, 수입업자 또는 생산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함

- 식품변조방지법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 PFA)
 - 1954년 식품 변조 방지법(PFA)과 1955년의 PFA 규정은 불순하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기성있게 표지된 식품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
 - PFA 표준과 규칙은 국내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
 - PFA는 식품 색소, 방부제, 살충제 잔여량, 포장과 표지, 판매 규칙등 식품가공과 유통에 관련
 - PFA는 인도 식단의 큰 부분을 구성하는 주요 식품의 규제 표준 제정에 우선적임
 - 모든 수입품 및 국내식품은 표시 요건 등 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PFA의 개정은 식품표시중앙위원회에서 결정

- 중량 및 측정표준법 (The Standards of Weights and Measures Act: SWMA)
 - 1976년의 중량 및 표준법과 1977년의 중량 및 측정 (포장 상품) 규정은 포장된 상품과 관련하여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립하기 위해 설계됨
 - 이 법과 규정은 식품의 유형, 제조업체, 주소, 수량, 제조일자, 소비자가격 등의 관련된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함
 - PFA가 다루는 식품에는 추가적인 표시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며 소비자 보호, 식품 및 공공 유통부 내 소비자보호과가 담당부서임
 - 포장된 상품의 수입업자들은 제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것 외에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함

- 과일식품 규정 (The Fruit Products Order : FPO)
 - 과일식품 규정은 가공 과일과 야채, 감미료를 첨가한 탄산수, 식초, 합성시럽의 생산과 마케팅에 관련된 기준 및 품질 관리 요건을 포함
 - 모든 가공 시설은 과일식품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때때로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며 수입 가공 과일이나 야채 제품은 반드시 과일 식품 규정의 표준을 충족해야함

- 육류식품 규정 (The Meat Food Products Order : MFPO)
 - 1992년의 육류식품에 함유된 중금속, 보존료, 농약의 잔여량 허용치를 규정

- 육류식품 규정은 농업부의 마케팅 및 검역실이 담당부서이며 국내 가공업자와 육류 제품 수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

- 가축 수입법 (Livestock Importation Act : LIA)
 - 1898년의 가축 수입법에 따라 인도 정부당국은 농업부 축산업 및 낙농업과가 시행하는 가축과 그 관련 제품의 인도로의 수입 절차를 규정
- 우유 및 유제품 규정 (Milk and Milk Products Order : MMPO)
 - 1992년의 우유 및 유제품 규정은 유제품의 생산, 유통, 공급을 규정하고, 우유, 유제품, 유제품가공설비, 유제품가공장의 위생 요건을 규정
 - 우유 및 유제품 규정은 우유와 유제품에 해당하는 품질 관리 표준을 제정하며 또한 이 규칙에 명시된 표준은 수입 유제품에도 적용
 - 우유 및 유제품 규정은 농업부 축산업 및 낙농업과가 담당부서임